

제 810 호

1978. 11. 7.

발행처 : 서울특별시청 남 편 4
 편집 : 홍보담당 김진오
 전화 75-7534
 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행소
 전화 75-6444, 6090

시 보

화 매

① 소 계	
제 737 호	서울특별시 위생의리장 설치요령..... 3
② 규 칙	
제 1270 호	서울특별시 의무축약규정중 개정 규칙..... 3
제 1271 호	서울특별시 직업안전위원회 규칙..... 4
③ 고 告	
제 246 호	한지세징지 변경 지정..... 5
④ 사 령 5

1. 이 공무원을 반드시 읽어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칙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함 시
총독부시 위령위원회 설치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양 내 지
1972년 11월 6일

③ 서울특별시조례 제 787 호

서울특별시위령위원회 설치조례
제 1 조 (목적) 본조의 위령적 처치를
위한 시설의 정비와 운영을 위하여
위령위원회 (이하 "위원회"이라 한다)
를 둔다.

제 2 조 (명칭 및 위치) 위원회의 명
칭 및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
이름 고시한다.

제 3 조 (직무)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
관장한다.

1. 본조의 위령적 총괄처리
2. 본조의 위령적 사업에 관하여는
부속원의 처리와 이용방법의 연구
발전
3. 본조의 위령적 사업의 연구발전
4. 기타 본조의 위령적 총괄처리에
관한 사항

제 4 조 (구성) ① 위원장에 장장을 두되
장장은 3명중을 1명 4명중을 1
명까지 시장중추원으로 보한다.

② 장장은 시장이 명한 1명 2명
까지 시장중추원을 지휘 감독한

다.
제 5 조 (공무원) 위원장에 부는 장
위원의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
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시정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위부속탁구결정 개정규칙
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양 내 지
1972년 11월 6일

④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0 호

서울특별시 위부속탁구결정 개정 규칙
서울특별시 위부속탁구결정 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2. 직 제수당 지급기준 가도
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직 제수당은 파견장 실명실적에
의한다. 다만, 제 1 절 전업연공 파
남부별원에 근무하는 위부속탁구
는 매년 200%의 실적으로 산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역안정위원회의 규칙을
제정하여 거대 공보한다.
서울특별시청 앞 대치
1972년 11월 6일

○ 서울특별시규칙 제 1271 호

서울특별시 지역안정위원회규칙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지역안정법
제 5 조 제 1 항 및 지역안정위원회의규
정 제 2 조의 규정과 의하여 서울특
별자치권안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
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조직) ①서울특별시 지역안정위
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
인을 포함한 합계 15인 이내로 구성
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
위원장은 보건의사회장으로 한다.

③위원회는 지역안정에 관한 학식과
경험이 풍부하고 및 관료직과 사공
직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시정기 위촉
한다.

제 3 조 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1년
으로 한다. 다만, 보건의위원의 임기는
원집중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

①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여 위원회
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
원장이 사요가 있을 때에는 그 직
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
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의
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
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과 과반수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
장의 참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6 조 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
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
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원조의 요청) 위원회는 관계
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
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8 조 (수당과 여비) 위원에 대하여
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
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
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감사) ①위원회에 감사 1인
을 둔다.

②감사는 사외과장으로 한다.

제 10 조 (운영요령) 위원회의 운영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
결을 거쳐 위원장이 명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공고 제 246 호

관지예정지 변경지침

1. 72. 10. 2. 서울특별시공고 제 222 호 계획결정 중요한바 있는 이촌 신원, 시흥, 영진, 김포, 오기구의지리사 임기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오기구의지리사령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관지예정지를 아흔과 같이 변경 지정합니다.

2. 관지예정지 변경지침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계 1 과 또는 영등포구청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

에 비치하고 토기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(1) 토지대적지 변경내역 (가)

1972. 11. 6.

서울특별시공고

사 령

● 1972. 11. 6.

전남광안군 행정주서 이갑환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주서에 임함.
7호봉급 금함.
충주 군무장 명함.

전남광안군 지방행정서기 김우철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지방행정서기에 임함.
5호봉급 금함.
부성군 군무장 명함.

서울특별시공고